

# 조선시대 추고경차관 제도의 운영

허 문 행\*

## 목 차

- I. 머리말
- II. 추고경차관의 기원과 역할변동
  - 1. 15~16세기 추고경차관의 활동
  - 2. 17~19세기 추고경차관의 역할 변화
- III. 추고경차관 제도의 정비와 운영
  - 1. 추고경차관 제도와 관련한 규정
  - 2. 18세기 이후 추고경차관 파견의 감소
- IV. 맺음말

**국문초록** | 이 글은 조선시대 추고경차관推考敬差官 제도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조선시대 지방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에서 경차관敬差官으로 불리는 관원이 파견되었다. 경차관은 국가의 재정, 군사,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는데, 추고경차관은 지방에서 발생한 강상범죄를 철저히 조사하는 ‘특별수사관’이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추고경차관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15세기 중반으로 19세기까지 약 250건의 활동사례가 확인된다. 추고경차관은 표류자의 수색, 도적의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16세기 이후 주로 강상범죄綱常犯罪의 조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강상범죄는 왕실王室 혹은 친족親族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가리킨다.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은 국가와 가족의 중요성을

\* 許文行,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투고일: 2020. 5. 15. 심사완료일: 2020. 6. 18. 게재확정일: 2020. 6. 19.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0.38..109>

강조한 성리학性理學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에, 강상사건은 통치이념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강상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는 한편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고경차관을 파견하였다.

추고경차관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사건의 정황을 조사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직접 심문했으며 죄인에게 최후 진술을 받아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추고경차관의 파견이 증가하면서 활동에 필요한 규정이 정비되기 시작했다. 추고경차관에게 발급된 「추고경차관 재거사목推考敬差官齋去事目」에는 임무와 권한이 기록되어 있다.

추고경차관 제도를 통해 조선시대 국가의 지방 강상범죄에 대한 인식,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 경차관의 임무와 권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경차관의 성격을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핵심어** | 경차관, 추고경차관, 추고경차관재거사목, 강상범죄, 『추안급국안』, 『추조결옥록』

## I. 머리말

조선은 전국의 행정구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군현郡縣을 두었다. 군현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수령守令이 국왕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렸는데, 수령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경우 국가는 외방사신外方使臣을 보내 해결했다. 외방사신은 지방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관원을 두루 일컫는 용어로 파견목적 또는 관품官品에 따라 제사諸使·어사御史·경차관敬差官등으로 불리었다.<sup>1)</sup>

제사는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품계를 지닌 경우 붙는 호칭으로 군무軍務를 관장한 도체찰사都體察使 · 도순찰사都巡察使 · 찰리사察理使 등이 있었다.<sup>2)</sup>

1) 임선빈, 「조선초기 ‘外方使臣’에 대한 試論」, 『조선시대사학보』 5, 조선시대사학회, 1998, 59~60쪽.  
2) 『大典續錄』 「吏典」 官職 “奉命宰相 正一品則都體察使 從一品則體察使 正二品則都巡察使 從二品則巡察使 三品則察理使 隨品稱”.

어사는 시종신侍從臣으로 관리의 행실을 감찰하거나 민심을 파악하는 관원에게 붙는 호칭으로, 진휼어사賑恤御史와 암행어사暗行御史가 대표적이다.<sup>3)</sup> 경차관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재정, 사법, 민생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 관원으로, 주로 당하관堂下官이나 각사各司의 관원이 파견되었다.<sup>4)</sup>

외방사신 가운데 제사<sup>5)</sup>와 어사<sup>6)</sup>의 경우, 국가의 지방지배 및 외관外官의 통제와 같은 정치적 요소와 이들의 활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 반면 경차관에 대한 연구의 경우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첫 번째는 경차관의 종류에 대한 것으로 감찰 업무를 겸한 견사遣使의 한 갈래로 인식하거나<sup>7)</sup>, 국가의 지방지배 강화에 파견된 사신으로 정의한 것이다.<sup>8)</sup> 둘째는 경차관의 성격에 대한 것으로, 국가가 정치<sup>9)</sup> · 경제<sup>10)</sup> · 외교<sup>11)</sup> · 진휼<sup>12)</sup> 등 다양한 분야에 경차관을 파견하

- 
- 3) 『增補文獻備考』, 「職官考」 14, 權設職, 御史 “本朝御史 以堂下侍從官 特命遣之 號暗行御史…廉察官吏得失 民生疾苦 凡黜陟糾理 無不總管”.
  - 4) 『增補文獻備考』, 「職官考」 14, 權設職, 敬差官 “本朝置災傷敬差官 堂下文臣 分遣諸道 檢覈田政…又有黃腸敬差官 長生殿官員 栗木敬差官 奉常寺官員 分遣. [補] 又有推考敬差官.
  - 5) 임선빈, 앞의 논문, 1998; 김순남, 「朝鮮初期 體察使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6) 전봉덕, 『韓國法制史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한상권,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 上言 · 擊錚研究』, 一潮閣, 1996; 이희권,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集文堂, 1999; 심재우, 「19세기 전반 충청도 지역 지방통치와 사회문제 연구」, 『역사민속학』 26,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허문행, 「숙종대 암행어사제도의 정비와 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7) 전봉덕, 위의 책, 34쪽.
  - 8) 정현재, 「조선 초기의 경차관에 대하여」, 『복원사림』 1, 경복사학회, 1979.
  - 9) 임선빈, 위의 논문; 김순남, 「朝鮮初期 敬差官과 外官」, 『한국사학보』 18, 고려사학회, 2004.
  - 10) 이장우, 「조선초기의 손실경차관과 양전경차관」, 『국사관논총』 12, 국사편찬위원회, 1990; 최이돈, 「조선 초기 손실담협제의 규정과 운영」, 『규장각』 4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 11) 한문중, 「조선전기의 대마도 경차관」, 『전북사학』 15, 전북대사학회, 1992; 정다함,

였음을 분석했다. 이외에도 경차관과 같은 외방사신은 군현제郡縣制의 동요를 무마하기 위한 작은 요소일 뿐 본질적인 중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sup>13)</sup>

선행 연구를 통해 경차관에 대한 여러 사실이 밝혀졌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연대기자료에 따르면 경차관은 조선 전기 등장하여 후기까지 활동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선행연구는 조선 전기의 사례가 다수인 반면, 조선 후기의 경우에는 분석 사례도 적으며 경차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조차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둘째, 경차관의 파견목적이나 명칭이 분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량적인 분석이 병행되지 않아, 경차관이 어느 시기에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지방의 사법 관련 특수임무를 수행한 추고경차관推考敬差官에 대해 주목하였다. 글의 대상 시기는 15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연대기자료인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 『승정원일기』와 법제자료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sup>14)</sup>, 『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sup>15)</sup>을 통해 추고경차관의 활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추고경차관의 파견 배경, 역할 변화, 임무와 권한 등을 분석하

「조선초기 아인과 대마도에 대한 번리·번병 인식의 형성과 경차관의 파견」, 『동방학지』 14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12) 김순남, 「조선초기 진휼사신의 파견과 진휼청의 설치」, 『조선시대사학보』 41, 조선시대사학회, 2007; 원재영, 「조선시대 재해행정과 17세기 후반 진휼청의 상설화」, 『동방학지』 17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5.

13) 윤용혁, 「조선시대의 군현제와 지방통치-관계논문의 연구사적 정리-」, 『역사와 담론』 8·9합집, 호서사학회, 1980, 53~54쪽.

14) 『추안급국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주목된다. 김우철, 「조선후기 推鞫 운영 및 結案의 변화」, 『民族文化』 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15) 『추조결옥록』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주목된다. 유승희, 「조선후기 獄案修啓의 실태와 『秋曹決獄錄』의 편찬」, 『서지학연구』 46, 한국서지학회, 2010; 유승희, 「19세기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 『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7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여, 조선시대 추고경차관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경차관의 성격과 외방사신의 특징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Ⅱ. 추고경차관의 기원과 역할변동

### 1. 15~16세기 추고경차관의 활동

추고推考는 조선시대 연대기자료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이다. 16세기 이전의 추고는 ‘심문하다’·‘조사하다’와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였다. 16세기 이후 관원이 추고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자 ‘징계’와 ‘처벌’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17세기 이후 주로 관원을 징계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sup>16)</sup>

추고라는 단어가 포함된 관직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 후기부터이다. 1276년(충렬왕 2) 원元에서 군사 500인과 혼인할 대상자를 청하자 충렬왕은 과부 처녀 추고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을 파견하였는데, 이는 추고의 용어가 포함된 최초의 관직이었다.<sup>17)</sup> 또 충렬왕은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을 설치하고 이영주李英柱(생몰년 미상)를 인물추고별감人物推考別監으로 임명했다. 이영주는 “대신들이 운영하는 전장田莊이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상소를 올렸는데, 이를 통해 조세와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이외에도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sup>19)</sup>,

16) 김진옥, 「推考의 성격과 運用」, 『고전번역연구』 3,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245~246쪽.

17) 『高麗史』 28, 「世家」 28, 충렬왕2 윤3월 갑자 “元遣楊仲信 賫幣帛來 爲歸附軍 五百人聘妻 王遣寡婦處女推考別監 正郎金應文等五人於諸道”.

18) 『高麗史』 123, 「列傳」 36, 폐행 이영주 “爲人物推考別監 白王曰 “大臣及內僚 多置田莊 爲逋逃淵藪 乞徵銀布 以充國用”

승인추고도감僧人推考都監<sup>20)</sup> 등이 설치되었는데,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려시대 추고별감은 국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임시로 설치된 관서인 도감에 소속된 관원을 의미했다.

조선시대 추고의 용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관직은 ‘추고경차관’이었다. 경차관은 고려시대나 중국의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관직으로 국가에 필요한 여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경차관’의 호칭을 띤 참상관參上官이었다. 경차관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흠차관欵差官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흠차관은 황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원이었다. 조선은 외교에 있어 중국의 제후국에 해당했으므로 유사한 경우라도 흠차라 지칭할 수 없었고 ‘흠欵’과 유사한 뜻을 가진 ‘경敬’을 차용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실록』에 따르면 조선 전기 경차관은 재정<sup>22)</sup> · 외교<sup>23)</sup> ·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국왕의 측근인 어사御史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경차관의 역할은 조세 · 형정 · 왕실과 관련된 업무에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sup>24)</sup> 경차관의 역할이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19) 『高麗史』 77, 「志」 31, 백관2 제사·도감·각색 “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忠肅王七年置】”.

20) 『高麗史』 85, 「志」 39, 형법2 금령 “置僧人推考都監 禁諸寺勸化僧 來集京師 聚錢財 肆爲穢行者”.

21) 임선빈, 앞의 논문, 1998, 68~72쪽.

22) 손실 경차관損實敬差官,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 양전 경차관量田敬差官, 제언 경차관堤堰敬差官 등의 사례가 보인다.

23) 동북면 경차관東北面敬差官, 대마도 경차관對馬島敬差官, 삼위 경차관三衛敬差官 등 사례가 보인다.

24) 필자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인조 즉위년(1623)부터 경차관에 대해 가장 늦은 기록이 남아있는 광무 7년(1903)까지를 대상으로 경차관의 파견사항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災傷(193건), 田畚奴婢推刷(1건), 督運(3건), 推考(176건), 桑木(9건), 栗木(25건), 黃腸木(84건), 未詳(12건) 등, 총 503건의 경차관 파견사례가 확인된다.

추고경차관은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필자가 연대기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5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약 250건의 추고경차관 파견 사례가 확인된다(표 1).<sup>25)</sup>

연번	국왕	경차관 수(건)	연번	국왕	경차관 수(건)
1	세종	1	10	효종	6
2	세조	21	11	현종	23
3	성종	2	12	숙종	60
4	연산군	3	13	경종	4
5	중종	35	14	영조	34
6	명종	7	15	순조	18
7	선조	9	16	헌종	4
8	광해군	1	17	철종	5
9	인조	20	18	고종	2
합계			255		
*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세종~광해군 대의 추고경차관 수를 계량하였음. * 『승정원일기』를 바탕으로 인조~고종 대의 추고경차관 수를 계량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과 중복된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는 『승정원일기』 계량에 산입하였음.					

<표 1> 조선시대 국왕대별 추고경차관 파견 사례

추고경차관은 지방에 있는 강상죄인綱常罪人을 추고하기 위해 파견되는 경차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 전기부터 형정과 관련한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연대기자료를 통해 살펴본 15~16세기 추고경차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sup>26)</sup>

25) 추고경차관의 파견 사례는 경차관의 명칭에 ‘추고’가 포함된 경우, 경차관의 명칭에 ‘추고’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기사의 내용을 통해 추고경차관임을 알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첫째, 표류인을 조사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 연대기자료에 따르면 최초의 추고경차관은 1443년(세종 25)으로 표류인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박원형朴元亨(1411~1469)이었다. 이 해 명 황제는 조선에 표류한 조선 사람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칙서를 보내왔다. 칙서는 “절강浙江에서 왜구로 의심되는 자를 붙잡았는데 심문해보니 조선 남주臘州의 강관토江官土라는 사람이었다. 고기잡이를 나왔다가 표류해 중국에 이르렀다고 하므로 북경으로 이송하였으니, 조선 사람이 맞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sup>27)</sup> 세종은 사복 판관 박원형을 표풍인 추고경차관漂風人推考敬差官으로 삼아 나주와 전라도 연해를 수색하도록 명하였다.<sup>28)</sup>

둘째, 도적을 추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459년(세조 5) 경상도 단성현丹城縣에서 박귀생朴貴生이라는 백성이 억울하게 강도로 몰려 고문을 받던 중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sup>29)</sup> 세조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판 군자감사 김필金玪(생몰년 미상)을 경상도 강도 추고경차관慶尙道強盜推考敬差官으로 삼아 사건을 명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잘못된 조사로 백성을 죽게 한 수령들을 엄하게 추국하도록 명하였다.<sup>30)</sup> 1465년(세조 11) 전국에서 많은 도적이 잡혀 옥사獄송가 가득 차게 되자 좌승지 윤필상尹弼商(1427~1504)은 경차관을 보낼 것을 청하였다. 세조는 경기·충청·전라·경상·황해·강원에 15명의 경차관을 파견하고 도적들을 죄상에 따라 추국推鞠하고, 도적을 잡는다는 핑계로 월권을 행사한 수령도 엄하게 다스리도록 했다.<sup>31)</sup> 추국은 왕명

26) 필자가 앞서 언급한 255건의 추고경차관 파견 사례 가운데, 15~16세기의 사례 79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27) 『世宗實錄』 권101, 세종 25년, 7월 19일(임신).

28) 『世宗實錄』 권101, 세종 25년, 8월 1일(계미) 박원형이 표류한 사람의 행방을 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명나라에 주청사로 간 정분鄭奉(미상~1454)을 표류인들과 접견한 결과 강관토는 제주 사람으로 확인되어 조선으로 돌아왔다.(『世宗實錄』 권102, 세종 25년, 11월 15일 병인).

29) 『世祖實錄』 권15, 세조 5년, 3월 8일(경인).

30) 『世宗實錄』 권15, 세조 5년, 3월 10일(임진).



에 따라 의금부義禁府에서 시행되던 국문鞫問이었다는 점과, 수령을 처벌할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통해 추고경차관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셋째, 외적의 침입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497년(연산군 3) 전라도 녹도鹿島에 왜구가 침입해 만호와 군사들을 살해했다. 연산군은 직제학 양희지楊熙止(1439~1504)를 왜인 추고경차관倭人推考敬差官으로 삼아 사건의 정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sup>32)</sup> 양희지는 왜관倭館이 있는 삼포에서 범인들을 수색하는 한편, 우두머리 사두沙豆 등을 효유해 재발 방지와 죄인 체포에 협조할 것을 다짐받았다.<sup>33)</sup> 1523년 충청도에 왜구가 침입했을 때 수군을 지휘하는 수사와 우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패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 표빙表憑(미상~1524)이 충청도 추고경차관으로 나아가 수군이 패한 정황을 보고하였는데, 중종은 표빙에게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결죄決罪하기 위해 자세히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sup>34)</sup> 이외에도 1544년(중종 39) 사랑진 왜변蛇梁津倭變이 발생했을 때, 추고경차관 권철權楨(1503~1578)은 왜변의 주도자를 색출하고 병사와 수사의 대응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sup>35)</sup>

넷째, 왕실의 위협을 훼손한 사건을 안핵按覈하였다. 1535년(중종 30) 경상도 영천군榮川郡에 위치한 세자(인종)의 태실太室<sup>36)</sup>이 불에 타고 석물石物이 훼손되었다.<sup>37)</sup> 중종은 이를 반역과도 다를 것이 없다 여기고, 의금부

31) 『世祖實錄』 권36, 세조 11년, 7월 14일(기미).

32) 『燕山君日記』 권22, 연산군 3년, 3월 3일(을사).

33) 『燕山君日記』 권22, 연산군 3년, 4월 13일(갑신); 4월 25일(병신).

34) 『中宗實錄』 권48, 중종 18년 6월 28일(정묘).

35) 『中宗實錄』 권103, 중종 39년 5월 26일(계해).

36) 조선 제 12대 임금인 인종의 태실로 1521년(중종 16) 조성되었다. 1928년 일제에 의해 인종의 태 향아리와 지석은 서삼릉西三陵으로 옮겨졌다.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산24에 위치해 있다.

37) 『中宗實錄』 권80, 중종 30년 9월 16일(갑술) 수령에게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태실의 석물을 훼손한 윤말금尹末金은 도망쳤다가 11년 후 체포되어 의금부에서 삼성추국

낭관을 보내 조사하도록 명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안현安瑄(1501~1560)을 추고경차관으로 삼아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안현은 임지로 떠나기에 앞서 ‘수령들이 경차관의 말을 듣지 않거나 죄인을 체포하는데 힘쓰지 않는 경우 치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청하였고, 중종은 이를 윤택하며 ‘사건에 어긋난 정황이 있으면 형추刑推해서라도 실정을 알아낼 것’을 명하였다.<sup>38)</sup> 이외에도 1538년(중종 33) 『실록』을 보관되었던 성주 사고星州史庫의 화재<sup>39)</sup>, 1544년(중종 39) 후릉厚陵<sup>40)</sup> 정자각丁字閣의 화재<sup>41)</sup>, 충청도의 감시監試에서 유생들이 시관試官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추고경차관이 파견되었다.<sup>42)</sup>

다섯째, 백성이나 아전이 관원을 능욕하거나 1531년(중종 26) 영광군寧光郡의 향리 박태근朴太根 등이 군수 임백령林百齡(1498~1546)과 갈등을 빚게 되자 도적을 사주하여 군수 부친의 묘를 파내버린 사건<sup>43)</sup>, 1552년(명종 7) 평산 부사 조숭조趙崇祖(생몰년 미상) 부를 순찰할 때 백성들이 부사를 향해 활을 쏘거나 속소에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을 때 경차관이 파견되었다.<sup>44)</sup> 위의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추고경차관은 임금의 특명을 받아 국가의 형정 刑政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심문’ 또는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 관원이었다.

---

을 받았다.(『明宗實錄』 권3, 명종 1년 4월 24일 경술).

38) 『中宗實錄』 권80, 중종 30년 10월 17일(을사).

39) 『中宗實錄』 권89, 중종 33년 12월 9일(무신); 중종 34년 1월 14일(계미).

40) 조선 제 2대 임금인 정종과 비 정안왕후의 능묘로 북한의 개성직할시 판문군에 위치해 있다.

41) 『中宗實錄』 권103, 중종 39년 5월 9일(병오).

42) 『明宗實錄』 권29, 명종 18년 8월 23일(기사).

43) 『中宗實錄』 권71, 중종 26년 10월 6일(병술).

44) 『明宗實錄』 권14, 명종 8년 5월 14일(기미).

## 2. 17~19세기 추고경차관의 역할 변화

추고경차관은 앞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사족士族이 천인賤人과 사통하거나, 백성이 자신의 부모나 친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강상綱常과 관련한 사건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추고경차관의 활동 사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로 강상죄인을 전담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강상죄는 인간의 역할과 윤리에 대해 규정한 삼강오상三綱五常을 어기는 행위로, 국가는 일반 범죄보다 강상죄를 무겁게 처벌하였다.<sup>45)</sup> 중앙에서 강상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면 의금부義禁府에서 죄인을 추포하였다. 이후 형조刑曹, 사헌부司憲府, 의금부가 함께 죄인을 심문하는 삼성 추국三省推鞠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결안結案을 받는 후 국왕이 마지막 처분을 내렸다.<sup>46)</sup> 반면 지방에서 강상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1526년(중종 21) 황해도 배천白川에서 부친을 시해한 조근손趙根孫 사건의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전에는 조근손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본도 관찰사가 추국을 끝내고 계문한 뒤에 죄를 정했습니다, … 이 사람은 죄가 크고 극악하니 잡아다 추국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도에 도망칠 우려도 있으니 조관을 보내어 추국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품계가 높고 일을 잘 아는 조관을 보내라” 하였다.<sup>47)</sup>

위의 기사를 통해 지방에서 강상 사건이 발생하면 해도該道の 관찰사가 발생 지역의 인근 고을 수령들과 함께 1차로 정황을 조사한 다음 조정에

45) 조운선, 『朝鮮後期 綱常犯罪의 양상과 法的 대응책』, 『법사학연구』 34, 한국법사학회, 2006, 40쪽.

46) 김영석 역주, 『금오현록 역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25쪽.

47) 『中宗實錄』 권57, 중종 21년 8월 8일(기미).

보고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정은 관찰사의 계분을 국왕에게 아뢴 후 법에 따라 처분을 내렸는데, 간혹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하면 국왕의 특명으로 조관朝官이 파견되어 재수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16세기 중반 지방의 강상죄인을 처벌하는 과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국왕이 강상과 관련된 사건을 ‘인륜의 큰 변고’로 규정하고 경차관을 보내 본격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강상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방관이 나 조정 대신들은 경관을 보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청하였다.<sup>48)</sup> 국왕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국가의 위엄을 보이고 사증事證을 충분히 확보해 억울한 송사가 없게 하고자 추고경차관을 파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추고경차관을 통해 지방의 강상사건을 안핵하는 일은 17세기 초반에는 규례로 정착되어 있었다.<sup>49)</sup>

17세기 후반 강상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국왕은 강상죄인이 태어난 고을의 호칭을 강등하는 정책을 시행하는<sup>50)</sup>, 동시에 추고경차관을 더욱 자주 파견하였다. 현종(재위 1660~1674)과 숙종(재위 1674~1720)때 활동한 경차관의 수는 83건에 달했다. 필자는 추고경차관 파견이 규례가 된 이후 17~19세기 동안 추고경차관이 어떤 사건을 다루었는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파견 사례 176건 가운데 미상<sup>51)</sup>인 경우를 제외한 152건을 강상 사건의 대상에 따라 ‘불충不忠’과 ‘불효不孝’로 분류하였다.<sup>52)</sup> 다음으

48) 『明宗實錄』 권17, 명종 9년 7월 22일(경신); 권 26, 명종 15년(1560) 2월 7일; 명종 18년(1563) 8월 23일.

49) 『宣祖實錄』 권127, 선조 33년, 7월 18일(기미) “綱常罪人 自前本道推問 啓本上來 則必遣別差官 得其端緒 啓聞後 拿來推鞠定罪 規例如此 實出於重其事也”.

50) 『承政院日記』 179책, 현종 4년 6월 16일(임자) “綱常罪人胎生之地 降其邑號 罷其守令 本非法典所載 而國朝行之已久…上曰, 今後以罪人所居官, 降罷事, 定式施行”.

51) 연대기자료에 경차관의 파견 기록만 기록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52) 불충은 대상이 국왕이나 관원인 경우로 왕릉을 훼손하거나, 국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훼손하거나, 관장을 능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반면 불효는 대상이 가족이나

로 18세기 편찬된 법률서 『추관지秋官志』<sup>53)</sup>와 『전률통보典律通補』<sup>54)</sup>에 제시된 강상죄의 유형을 참고하여 추고경차관의 파견 사유를 23가지로 분류하였다(표 2).

---

친족인 경우로, 상해를 가하거나 사통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53) 『추관지』, 상복부詳覆部와 고율부考律部에 강상죄의 종류 15건이 기록되어 있다.

【상복부】 “弑父, 弑母, 毆父母, 弑夫, 奴殺主, 殺妻, 殺子婦, 殺弟, 殺姉妹女外孫女, 殺兄嫂姪婦, 殺從兄弟侄, 倫紀” 【고율부】 “寶印, 制書, 殿牌作變”.

54) 『전률통보』 형전刑典에 강상죄의 종류 18건이 기록되어 있다. “弑父母, 弑祖父母, 弑舅姑, 殺夫, 弑伯叔父母, 弑兄弟, 奴弑主, 官奴弑官長, 雇工弑家長, 淫蒸後母, 淫姦伯叔母, 淫姦姑母, 淫姦姊妹, 淫姦子婦, 奴姦女上典, 放賣嫡母, 毆辱父母, 燒火父屍”.

연번	분류1	분류2	유형	파견횟수	합계			
1	불충	인명	관장을 살해하려 모의함[謀殺官長]	1	35			
2		기타	왕릉에 방화를 함[王陵火災]	1				
3			전패를 훼손함[殿牌作變]	33				
4	불효	인명	조부모를 시해함[弑祖母]	1	106			
5			부모(양친)를 시해함[弑父母]	1				
6			부친을 시해함[弑父]	17				
7			모친을 시해함[弑母]	6				
8			숙부를 시해함[弑叔父]	3				
9			숙모를 시해함[弑叔母]	2				
10			시아머니를 시해함[弑姑]	2				
11			남편을 시해함[弑夫]	38				
12			남편을 시해하고자 모의함[謀弑夫]	1				
13			형을 시해함[弑兄]	6				
14			동생을 살해함[殺弟]	1				
15			친족을 살해함[殺親族]	3				
16			주인을 시해함[弑主]	23				
17			주인을 시해하고자 모의함[謀弑主]	2				
18			치정			친속을 강제로 간음함[相姦]	1	3
19						친속 간에 간통함[淫姦]	1	
20						손 위의 여성과 사통함[淫蒸]	1	
21	기타		저주[詛呪]	5	8			
22			유골을 훼손함[遺骨毀損]	1				
23			부모를 무고함[父母誣告]	2				
<b>합계</b>				<b>152</b>				

<표 2> 추고경차관이 파견된 강상사건의 유형

17~19세기 추고경차관의 파견배경이 된 강상사건을 분류해보면 ‘불충’의 경우 지방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훼손하는 행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패는 그 자체로 왕권을 상징했으므로 관리를 소홀이한 수령은 처벌을

받았는데, 백성들은 불만과 억울함을 표출하거나 수령을 내쫓기 위해 전패를 훼손하기도 하였다.<sup>55)</sup> 전패와 관련한 추고경차관의 활동에 대해서는 1807년(순조 7) 충청도 덕산현德山縣 전패작변을 조사한 남달손南達孫(1765~미상)의 계본啓本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신은 4월 2일 삼가 덕산현 전패 훼손사태를 일으킨 죄인을 심문하라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20일 임금님께 하직인사를 드리고, 24일 말을 달려 공주목公州牧에 도착하였습니다. 죄인은 충청감영에서 직접 심문해 판결문을 작성한 다음 옥에 가두었습니다. 신은 공주목에 머무르며 규정대로 조사해 최후 자복 진술을 받았습니다. … 규정대로 진술을 받아 판결문을 작성해 말을 달려 임금님께 보고 드립니다. 청컨대 죄인은 해당 관아로 하여금 법률을 적용해 처단케 하십시오.”<sup>56)</sup>

남달손의 계본에 따르면 추고경차관은 강상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머물며 죄인의 신변을 확보하는 한편, 사건의 관련자들을 자세하게 조사했다. 죄인부터 진술을 받아 판결한 다음 계본을 올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불효’의 경우 가정 내부의 불화가 목숨을 앗는 사건으로 확장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부모나 시부모를 시해하는 경우(27건),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38건), 노비나 고공雇工이 주인을 시해하거나 모의한 경우(25건)는 집안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큰 요소였기에 추고경차관의 엄중한 조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친속 간의 치정사건, 저주, 부모를 무고하는 행위는 사회윤리를 어지럽힐 수 있었으므로 경차관이 사건을 안행하였다.

55) 윤석호, 「조선후기 殿牌作變 연구」,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16, 283쪽.

56) 이상식 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78, 「전패사건을 일으킨 죄인 趙謹煥 심문기록」, 흐름, 2014, 105~108쪽.

### Ⅲ. 추고경차관 제도의 정비와 운영

#### 1. 추고경차관 제도와 관련한 규정

추고경차관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임명되었을까? 『추관지』에 따르면 외방으로 가는 추고경차관은 서리書吏 1인을 대동하며, 형조에서 별도로 차정하였다.<sup>57)</sup> 형조에서 정해진 경차관은 이조의 구전口傳을 통해 관직을 제수받아 임지로 차송되었다.<sup>58)</sup> 또 『육전조례』에 따르면 지방에서 강상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도는 죄인을 동추同推하고 형조에 보고하였다. 형조에서 추고경차관을 보낼 것을 청하고, 임금의 재가[下批]를 얻으면 대간의 직함[臺銜]을 겸대兼帶하고 재거사목齎去事目을 받아 임지로 출발하였다.<sup>59)</sup>

추고경차관의 임무와 권한은 형조에서 발급한 재거사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사목은 실물이 남아있지 않지만 연대기자료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몇몇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1465년(세조 11) 도적을 추고하기 위한 경차관의 사목에는 ‘벼슬한 사람의 집도 수색하거나, 수령이 도적을 잡는다는 핑계로 백성을 수탈한 경우 치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sup>60)</sup> 1535년(중종 30) 영천의 태실 방화 추고 경차관의 사목에는 ‘경차관의 명을 수행하지 않는 고을 수령, 죄에 연루된 공신이나 의친議親도 형추할 수 있는 권한’이 수록되었다.<sup>61)</sup> 이외에도 1561년(명종 16) 전라도에 파견되는 추고

57) 『秋官志』 권1, 雜儀, 九房舉行 “外方推考敬差官 書吏一人 自本曹定送”.

58) 『承政院日記』 223책, 현종 12년 4월 12일(계사) “曹口傳政事 以李光迪 爲平安道推考敬差官”; 『承政院日記』 285책, 숙종 7년 11월 7일(병진) “吏曹口傳政事 以安漢珪 爲公洪道推考敬差官”.

59) 『六典條例』, 刑典, 按覈 “綱常罪人 自該道 同推考覆 具案上來 則令該曹 差定推考敬差官 發遣 按覈後 稟處事 回啓 【待政下批 兼付臺銜 齎去事目 入啓後, 該道執吏隨去】 到該道 按覈後 馳啓”.

60) 『世祖實錄』 권36, 세조 11년 7월 14일(기미).

61) 『中宗實錄』 권80, 중종 30년 10월 17일(을사).



경차관은 수령守令·도장都將·색리色吏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기록된 사목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통해, 경차관의 임무와 권한이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sup>62)</sup>

1631년(인조 8) 지의금부사 박정현朴鼎賢(1562~1637)이 계문을 올려 ‘지방에 강상의 옥사가 발생하면 전례대로 추고경차관을 보내 먼저 관련자[事干]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차관들이 이러한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련자를 조사하기 전에 먼저 정범正犯만 국문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경차관이 임의대로 정범을 형추하는 폐단을 없앨 것’을 청하였다. 인조는 박정현의 청을 윤택하였고 관련 규칙이 제정되었다.<sup>63)</sup>

조선후기 추고경차관 사목은 형조에서 처결한 옥안을 수록한 『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에 수록되어 있다(표 3). 『추조결옥록』의 사목은 모두 10건으로 전패를 훼손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경차관에게 지급된 것으로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sup>64)</sup>

62) 『明宗實錄』 권27, 명종 16년 7월 24일(임자).

63) 『秋官志』, 三省推治規式 “仁祖八年 知義禁朴鼎賢所啓 有外方綱常之獄 例送推考敬差官 先問事干之人 近來敬差之下去者 不知前規 未推事干之前 先鞫正犯之人 以至徑斃 … 自今一定規式 使敬差官不得任意刑推 俾無正犯徑斃之患 何如上曰 依爲之”.

64) ①위원군 전패작변(1822년), ②토산현 전패작변(1822년), ③안산군 전패작변(1845년), ④황간현 전패작변(1851년), ⑤영종진 전패작변(1853년), ⑥대구부 전패작변(1855년), ⑦청주목 전패작변(1856년), ⑧고산현 전패작변(1861년), ⑨단양현 전패작변(1865년), ⑩괴산군 전패작변(1878년).

추고경차관 재거사목推考敬差官齋去事目 <sup>65)</sup>
하나. 응당 물어야할 각 사람이 어그러진 단서가 있거든 날날이 형추해 정황을 알아낼 것
하나. 외방의 감옥은 소루해지기 쉬우므로 군인을 많이 정하여 단단히 지킬 것
하나. 시급한 공무는 발마撥馬로 전달할 것
하나. 서리 1인을 데려갈 것
하나. 인신印信 1과顆는 예조로 하여금 발급해 보낼 것
하나. 서리가 타고 가는 말은 병조로 하여금 발급해 보낼 것
하나. 미진한 조건은 편의를 따라 시행할 것 (또는 추후 마련할 것)

<표 3> 『추조결목록』의 추고경차관 재거사목

재거사목의 내용을 통해 『추관지』와 『육전조례』에서 언급된 규정 이외에 실무에 필요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목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감옥을 지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중죄수가 옥문을 부수고 도주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기 때문으로<sup>66)</sup>, 강상사건은 국가가 직접 나서 처벌하는 만큼 죄인의 신변을 지키는 데 각별한 주의를 요했음을 알 수 있다.

추고경차관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처벌을 받았다. 1687년 (숙종 13) 성주에서 조카와 숙모가 간통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권환權煥(1644~미상)이 추고경차관으로 사건을 안핵하였다. 그런데 사건의 관련자인 김석철金石哲의 처음 진술과 경차관의 계본의 기록이 어긋나는 점이 발견되

65) 一. 應問各人 如有違端是白去等 這這刑推得情爲白齊 一. 外方刑獄[獄情] 易致疏漏 多定軍人堅守爲白齊 一. 時急公事乙郎 撥馬傳致爲白齊 一. 書吏一人帶去爲白齊 一. 印信一顆乙郎 令禮曹給送爲白齊 一. 書吏所騎馬乙郎, 令兵曹給送爲白齊 一. 未盡條件隨宜施行(追後磨鍊)爲白齊.

66) 『현종개수실록』 권23, 현종 11년 11월 15일 “京畿 積城縣有無賴人十餘輩 乘夜結黨 打破獄門 奪取殺人重囚而走”; 『영조실록』 권61, 영조 21년 6월 3일 “近來兩西各邑盜賊之越獄逃躲甚多 極爲寒心 安州考覆賊人九名 打破獄門 一時逃走 可見外方刑獄之不嚴”.

어 권향은 중중추고從重推考를 받았다.<sup>67)</sup> 1692년(숙종 18) 함흥부咸興府의 호석虎碩과 기석麒碩이 아버지를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만정朴萬鼎(1648~1717)이 추고경차관으로 낙점되었다. 그런데 박만정은 시일을 끌고 임지로 떠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숙종은 비망기를 내려 “강상의 막대한 변고는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안문按問하고 법에 따라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 데 경차관으로 낙점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안행하지 않으므로 추고하라”는 명을 내렸다.<sup>68)</sup>

이외에도 추고경차관 제도가 운영되는데 있어 주목되는 것은 상피相避가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상피는 조선시대 관원들이 일정 범위 내의 친족간 같은 관사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파견하지 않는 인사제도였다. 1670년(현종 11) 경주의 여인 진상眞詳이 남편을 살해했을 때, 형조 정랑 이석번李碩蕃(1617~미상)이 추고경차관에 임명되었다. 이 때 사헌부에서 “안옥의 사체事體는 중대한데 이석번의 집이 경주 근처인데도 차송한 것은 매우 해괴하므로 천거한 이조의 관원을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sup>69)</sup> 현종이 대간의 청을 윤택하지 않아 추고경차관이 교체되지 않았지만,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피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7) 『承政院日記』 322책, 숙종 13년 6월 10일(병진) “慶尙道推考敬差官權恒 星州罪人金榮中按問啓本 則罪人石哲所犯 既已當初檢覈時納供 無所差違…請敬差官權恒 從重推考 傳曰 依啓”.

68) 『承政院日記』 347책, 숙종 18년 3월 18일(정묘) “咸鏡道囚推罪人虎碩等 弑父情節 極其凶慘 此實綱常莫大之變 不可一日容息於覆載之間 所當斯速按問 明正典刑 而推考敬差官落點啓下 爲日已久 而尙不下去 事之未安 莫此爲甚 敬差官朴萬鼎 推考”.

69) 『承政院日記』 219책, 현종 11년 5월 12일(정묘) “推考敬差官 從前擇差 蓋以按獄之事體重大 不可人人而苟充也…且碩蕃家 在於慶州之隣邑 該曹之循其私懇 仍使差送 殊甚可駭 請吏曹當該堂上·郎廳 從重推考”.

## 2. 18세기 이후 추고경차관 파견의 감소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7~19세기 추고경차관 176건 가운데, 인조(재위 1623~1649)부터 영조(재위 1724~1776)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활동한 수는 147건에 달했다. 반면 정조(1776~1800)부터 고종 15년(1878)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활동한 추고경차관의 수는 29건 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상사건 가운데서도 전패작변에만 파견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외방의 강상죄인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후기 추고경차관 제도에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선 후기 어사파견의 확대, 사회적인 측면에서 주전廚傳<sup>70)</sup>의 폐단에 대한 공론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나타난 것이라 보았다. 먼저 조선 후기 어사파견의 확대에 대해 살펴보면 정조가 영조의 업적을 찬미하며 반포한 교서의 한 대목이 주목된다.

“죄인을 신중히 심리하시어 옥사를 결단하실 때에는 불쌍히 여기고 공경 하셨다 …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여 억울한 하소연이 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사를 보내 심리하도록 하셨다. 이상은 선왕께서 형벌을 신중히 하신 것이다.”<sup>71)</sup>

영조는 재위기간 동안 55건의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한편<sup>72)</sup>, 지방에서 발생한 의옥疑獄을 해결하기 위해 안핵어사按覈御史<sup>73)</sup>, 심리사審理使<sup>74)</sup>로

70) 주廚는 음식점인 주포廚舖, 전傳은 역마를 내주는 역전驛傳을 의미한다. 즉, 지방을 왕래하는 관원에게 경유하는 음식과 역마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71) 『日省錄』 권121, 頒英宗大王定世室教文 정조 6년 11월 27일(임인) “欽哉惟恤 哀歎折獄 設申鼓以通冤訴 遣繡衣以行審理 此寧考之恤刑也”.

72) 고석규 외,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박이정, 1999, 76~77쪽.

73) 『英祖實錄』 권9, 영조 2년 1월 10일(계묘) “以李瑜爲梁山郡按覈御史 上引見瑜 勉飭甚勤”.

74) 『英祖實錄』 권61, 영조 21년 1월 13일(을유) “命分遣審理使于八道 疏決冤獄”.

불리는 어사를 별도로 차송하였다. 1746년(영조 22) 어사 조운규趙雲逵(1714~1774)는 손윗사람과 간음한 김진관金震寬, 아지阿只등을 색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어사가 추고경차관의 역할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75)</sup> 정조 또한 60건의 암행어사를 파견한 것은 물론, 금천현衿川縣에서 읍리가 관장을 살해하려던 사건이 발생하자 안핵어사 이기李夔(1730~미상)를 파견하여 죄인을 추국하였다.<sup>76)</sup> 순조 대에는 전패를 훼손한 죄인을 조사하기 위해 추고경차관이 파견되었지만, 영변군寧邊郡에서 부친을 시해한 김석언金石彦 사건이 발생하자 안핵어사 한용의韓用儀(1772~미상)를 보내 사건을 조사하였다.<sup>77)</sup> 이렇듯 강상죄인을 안핵하는데 ‘어사’의 파견이 빈번해짐에 따라 추고경차관의 역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주전의 폐단에 따라 경차관 파견이 정지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정조 2년(1778) 함경도 길주목吉州牧에서 대낮에 전패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정에서는 전례에 따라 경차관을 파견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영의정 김상철金尙喆(1712~1791)은 “경차관을 차송해야 되나 재해가 든 읍에 주전의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관찰사로 하여금 격식을 갖추어 옥사를 처리할 것”을 청하였다.<sup>78)</sup> 정조는 이를 윤택하였는데, 훗날 추고경차관 파견에도 영향을 미쳤다. 헌종 6년(1840) 개천군价川郡에서 전패작변이 일어났을 때 비변사는 ‘주전의 폐단이 예상되므로 정조의 선례를 따르자’ 청하여 추고경차관이 파견되지 않았다.<sup>79)</sup> 이외에도 조선왕조는 불가피한

75) 『英祖實錄』 권63, 영조 22년 1월 27일(갑오) “綱常罪人金震寬及女人阿只 連伊 金時亨及女人五丁伏誅…俱犯淫烝 震寬等秋曹考覆 移送王府 時亨等因 御史趙雲逵 按覈得實”.

76) 『正祖實錄』 권11, 정조 5년 4월 21일(갑자).

77) 『正祖實錄』 권11, 정조 5년(1781) 5월 22일; 『純祖實錄』 권21, 순조 18년(1818) 4월 14일.

78) 『日省錄』 권71, 命吉州敬差官姑爲安徐 정조 3년 1월 20일(을사) “領議政 金尙喆啓言 吉州殿牌作變罪人 既已承款 敬差官當爲依例差送 而災歲各邑 廚傳有弊 令道臣具格舉行 今番差定之行 請姑爲安徐 從之”.

79) 『備邊司謄錄』 권71, 헌종 6년 3월 18일(무신) “价川郡殿牌作變罪人 既已承款 敬差官

경우 도사(都事<sup>80</sup>)로 하여금 경차관의 직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경관의 파견으로 인한 영송(迎送)이나 접대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sup>81)</sup>

#### IV. 맺음말

추고경차관은 조선시대 지방의 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특별수사관’이었다. 추고경차관은 15세기 중반 표류자 수색을 위해 등장한 이래 19세기까지 255건의 활동사례가 확인된다. 경차관은 도적의 체포·외적의 침입에 따른 피해 조사·왕실이나 관청의 권위에 도전한 죄인을 색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6세기 중반이후 추고경차관은 본격적으로 강상사건을 조사·판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추고경차관은 강상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서 관련자를 직접 심문한 다음 국왕에게 치계(馳啟)하였다. 조선왕조가 추고경차관을 통해 강상 범죄를 다스린 가장 큰 배경에는 국가의 위엄을 드러내고 판결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억울한 송사가 없게 하는데 있었다.

17세기 이후 추고경차관의 활동에 필요한 규정이 본격적으로 정비되기에 시작했으며, 추고경차관은 지방의 수령부터 서리에 이르는 관원을 통제할

---

當爲差送矣 謹考正宗己亥 北關亦有此變 而因該道災歲廚傳之弊 令道臣 具格舉行 敬差官 則稟旨安徐”.

80) 이희권,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集文堂, 1999, 79쪽. 도사는 각 도마다 1원씩 배정된 중 5품의 외관직으로 監司를 보좌하여 도내 외관의 비위규찰·향시주관·전취 등 실무를 주관하고 감사 유고시 업무를 대행해 ‘아감사’라고도 불리었다. 또한 감사를 거치지 않고 국왕에게 도의 사정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81) 안홍민, 「조선전기 외관직 도사의 업무실태와 위상」,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3쪽.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18세기 이후 어사제도가 정비되고 주전의 폐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고경차관 파견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패작변과 같은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차송되는 모습을 보였다.

## 참고문헌

### 原典

- 『高麗史』  
『大典續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典律通補』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秋官志』  
『秋曹決獄錄』(奎15148)

### 著書

- 고석규 외, 『암행어사란 무엇인가』, 박이정, 1999.  
이상식 역주, 『국역 추안급국안』 78, 흐름, 2014.  
이희권,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集文堂, 1999.  
전봉덕, 『韓國法制史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한상권,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 : 上言 · 擊錚研究』, 一潮閣, 1996.

### 論文

- 김순남, 「朝鮮初期 體察使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_\_\_\_\_, 「朝鮮初期 敬差官과 外官」, 『한국사학보』 18, 고려사학회, 2004.  
\_\_\_\_\_, 「조선초기 진휼사신의 파견과 진휼청의 설치」, 『조선시대사학보』 41, 조선시대사학회, 2007.  
김우철, 「조선후기 推鞠 운영 및 結案의 변화」, 『民族文化』 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김진옥, 「推考의 性格과 運用」, 『고전번역연구』 3,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심재우, 「19세기 전반 충청도 지역 지방통치와 사회문제 연구」, 『역사민속학』



- 26,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 안홍민, 「조선전기 외관직 도사의 업무실태와 위상」,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유승희, 「조선후기 獄案修啓의 실태와 『秋曹決獄錄』의 편찬」, 『서지학연구』 46, 한국서지학회, 2010.
- \_\_\_\_\_, 「19세기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 『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7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 윤석호, 「조선후기 殿牌作變 연구」,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윤용혁, 「조선시대의 군현제와 지방통치: 관계논문의 연구사적 정리」, 『역사와 담론』 8·9합집, 호서사학회, 1980.
- 이장우, 「조선초기의 손실경차관과 양전경차관」, 『국사관논총』 12, 국사편찬위원회, 1990.
- 임선빈, 「조선초기 外方使臣에 대한 시론」, 『조선시대사학보』 5, 조선시대사학회, 1998.
- 원재영, 「조선시대 재해행정과 17세기 후반 진휼청의 상설화」, 『동방학지』 17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5.
- 정다함, 「조선초기 야인과 대마도에 대한 번리·번병 인식의 형성과 경차관의 파견」, 『동방학지』 14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 정현재, 「조선 초기의 경차관에 대하여」, 『복원사림』 1, 경북사학회, 1979.
- 조운선, 「조선후기 강상범죄의 양상과 법적 대응책」, 『법사학연구』 34, 한국법사학회, 2006.
- 최이돈, 「조선 초기 손실담합제의 규정과 운영」, 『규장각』 4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 한문중, 「조선전기의 대마도 경차관」, 『전북사학』 15, 전북대사학회, 1992.
- 허문행, 「숙종대 암행어사제도의 정비와 운영」,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CHUGO KYONGCHAGWAN(推考敬差官)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HEO MOONHAENG (HEO, MOON HAENG)

The study is an analysis of Chugo Kyongchagwan's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Joseon Dynasty, when a special situation occurred in a region, the central government dispatched an official called Kyongchagwan(敬差官). Kyongchagwan worked in various fields such as national finance, military, and welfare, and, among them, Chugo Kyongchagwan was a “special investigator” who thoroughly examined the moral principle crimes occurred in regions.

According to the records of 『Joseon wangjo sillok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Seungjeongwon ilgi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Chugo Kyongchagwan first appeared in the middle of the 15th century, and about 250 cases of activities were confirmed until the 19th century. Chugo Kyongchagwans were dispatched to search for drifters and to arrest thieves, but, they mainly carried out the roles of investigating the moral principle crimes (綱常犯罪) since the 16th century. The moral principle crimes refers to violent crimes committed against the royal family(王室) and any ordinary family(家族) members. Since the ruling principle in the Joseon Dynasty was rooted in Neo-Confucianism(性理學), whi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King and ordinary family, the moral principle crimes case was considered a threat to its principle. As such, Central government dispatched Chugo Kyongchagwan to stabilize the public sentiment, while punishing the moral principle case more strictly.

Chugo Kyongchagwan conducted the roles that investigated the case circumstances (情況) in the area where the case occurred, directly interrogated the people involved, took the final statement from the criminal, and then reported it in person to the king. With the increase in dispatching Chugo Kyongchagwan, the regulations needed for their activities began to be improved. The mission and authority were recorded in 「Chugo Kyongchagwan-jegeosamok(推考敬差官齋去事目)」 which is issued to Chugo Kyongchagwan, accordingly, Kyongchagwan was able to directly control the government officials under Suryeong (守令).

Through the Chugo Kyongchagwan system, it can be looked into the perception of the moral principle crimes in regions of the Joseon Dynasty, the process of handling cases, and Kyongchagwan's mission and authority. Based on these, it is believe that it can contribute to clarify the characters of Kyongchagwan in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Kyongchagwan, Chugo Kyongchagwan, Chugo Kyongchagwan-jegeosamok, The definition of moral principles crime , Chuan and Gukan(推案及鞫案), Chuchogyeloklok (秋曹決獄錄)